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61
----------	------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2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기금 운영부서인 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간이 2026. 2. 28.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와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연직 심의위원 변경 (안 제6조제1항제2호)
 - 공무원 위원 중 ‘청사이전추진단장’의 삭제
- 심의위원회 간사 변경 (안 제6조제4항)
 -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신청사 건립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변경
- 기금관리공무원 변경 (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 기금운용관을 “총무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원을 “신청사 건립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변경
- 시행일 기준 설정 (안 부칙)
 - 동 조례안은 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간 만료 후인 2026. 3. 1.부터 시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 7]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첨 2])

다. 협의: 감사관, 예산담당관, 민주시민교육과와 협의 완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1]

2) 입법예고(2025.9.18 ~ 2025.9. 28.) 결과: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별첨 3]

3) 교육규제심사: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별첨 4]

5) 성별영향평가: [별첨 5]

6) 학생인권영향평가: [별첨 6]

【별첨 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예산담당관, 청사이전추진단장” 을 “예산담당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 을 “신청사 건립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교육행정국장” 을 “총무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 을 “신청사 건립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p> <p>1. (생략)</p> <p>2. 공무원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행정국장, 총무과장, <u>예산담당관</u>, <u>청사이전추진단장</u>으로 한다.</p> <p>3. (생략)</p> <p>② · ③ (생략)</p> <p>④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u>으로 한다.</p>	<p>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예산담당관</u>----- -----.</p> <p>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신</u> <u>청사 건립기금업무 담당사무관</u> --.</p>
<p>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p> <p>1. 기금운용관 : <u>교육행정국장</u> 2. 기금출납원 : <u>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u></p> <p>② (생략)</p>	<p>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 ----- ----- -----. 1. ----- <u>총무과장</u> 2. ----- <u>신청사 건립기금</u> <u>업무 담당사무관</u> ② (현행과 같음)</p>

【별첨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금관리공무원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 청사이전추진단(청사이전기획팀) 행정6급 이지은(T: 2282-8502)

【별첨 3】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별지 제5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제14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치 내용
	의 견 없 음	

【별첨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평 가 담 당	감사관	장학사	양 구 슬
입안주관부서	청사이전추진단	통보일	2025. 9. 17.
관련 조문	검토 결과		조치사항
○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10조 (기금 관리공무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임. ○ 본 조례 일부개정은 한시기구인 청사이전추진단의 업무를 이관함이 목적이므로 부패 유발 요인 없음 		원안동의

【별첨 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서울교육025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청사이전추진단									
	담당자명	이지은	전화번호 02-2282-850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9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청사이전추진단)	<p>제·개정 법령안에 다음 항목과 관련한 조항 유무 점검</p> <p>1-1.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있음: 아니오 1-2. 적용 대상 사용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 포함: 아니오 1-3. 법령상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 반영된 표현 포함: 아니오 2.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 해당 없음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구성 시 성별 고려 명시: 해당 없음 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함: 아니오 4.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 고려 명시: 해당 없음</p>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p><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p> <p>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1과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외부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수정을 권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계획·사업 내용)</th> <th>개선안 (법령 수정안, 계획·사업 개선 내용)</th> <th>검토사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td> <td>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성별을 고려 한다.</td> <td>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적용</td> </tr> </tbody> </table>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계획·사업 내용)	개선안 (법령 수정안, 계획·사업 개선 내용)	검토사유	1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성별을 고려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적용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계획·사업 내용)	개선안 (법령 수정안, 계획·사업 개선 내용)	검토사유								
1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성별을 고려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적용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뢰 시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여인진/02-399-9546)											
청사이전추진단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5A서울교육025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청사이전추진단	
	담당자명	이지은	전화번호 02-2282-8502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1과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외부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수정을 권함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성별을 고려한다."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이번 개정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당연직 위원 중 일부 삭제를 위한 것으로써, 다음번 개정에 개선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조항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	---	---	---

2025년 09월 29일

청사이전추진단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별첨 6】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개정)					
담당부서	청사이전추진단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이자은 (02-2282-8502)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임종수(위원장), 목소희, 박지만, 여미애, 정명화, 지유빈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제6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본 조례 개정안은 신청사 건립기금의 운용부서와 담당관을 청사이전 이후 업무개편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원안 동의	

【별첨 7】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 칙 <제8692호, 2023.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의2제2항의 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